

#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·융자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구성을 과반수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위촉직 위원인 민간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,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수를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임.(안 제2조)

1. 당연직 위원 : 농업기술센터소장, 재무과장, 환경복지과장, 건설과장, 지역도시과장

⇒ 자치행정·문화관광·임업경영과장 제외,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설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.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: 필요없음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하고,

동조제3항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삭제하고,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하며  
“문화관광과장”과 “임업경영과장”을 각각 삭제하고, “도시경제과장”을 “지역  
도시과장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<b>기획실장</b>이 된다.</p> <p>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<b>자치행정과장</b>, 재무과장, <b>문화관광과장</b>, 환경복지과장, <b>임업경영과장</b>, 건설과장, <b>도시경제과장</b>이 되며,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위촉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 .....<b>기획감사실장</b>.....</p> <p>③..... <b>농업기술센터소장</b>, ....., (삭 제) ....., (삭 제) ..... ....., <b>지역도시과장</b>..... ..... ..... .....</p>

## 關係法令 拔萃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16조의2 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 (예산의 편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·융자사업(이하 "투·융자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30조 (예산의 편성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·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(이하 "투자심사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제30조의3 (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### □ 평창군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정

제4조(투자심사위원회운영) ②투자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구성이 있을때까지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### □ 2004년도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)

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·융자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인 위원을 1/2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·투명성 확보